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06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황운하 · 차규근 · 정춘생
서왕진 · 백선희 · 주철현
이해민 · 김준형 · 강경숙
김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의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배송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운송수단은 사고 발생 시 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배송 현장에서 사업자나 영업점이 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함.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

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며,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및 제36조의2 신설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개인형 이동장치”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인명보호 장구 착용 관리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화물을 배송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이하 “인명보호 장구”라 한다)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자전거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배송하려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체계의 기준,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배
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14의2.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u>이륜자동차</u>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이하 “실외이동로봇”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나. ----- ----- ----- <u>인</u> <u>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개인형 이동장치”라 한다)</u> ----- ----- ----- ----- ----- ----- -----

4. ~ 7. (생략)

<신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4. ~ 7.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인명보호 장구 착용 관리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화물을 배송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이하 “인명보호 장구”라 한다)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자전거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배송하려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체계의 기준,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과태료) ① -----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3. (생략) <u><신설></u> <u><신설></u> <u>14. · 15.</u> (생략) ② (생략)	----- -----. 1. ~ 13. (현행과 같음) <u>14.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 증사업자</u> <u>14의2.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u> <u>15. · 16.</u> (현행 제14호 및 제1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